

표지면지

정의당 여성위원회

-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PROGRAM

사회 박인숙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장)

[14:00~14:10] 개회식

인사말 여영국 (국회의원)

인사말 이정미 (국회의원)

[14:10~15:00] 발제문

발제문 1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발제문 2 여성 안전은 생존권: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윤지연 (워커스 기자)

[15:00~15:30] 토론문

토론문 1 스토킹처벌법 현황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토론문 2 여성 1인 가구 당사자의 이야기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토론문 3 여성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

곽수진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Just Feminist' 회원)

[15:30~16:00]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CONTENTS

개회식

인사말	여 영 국 (국회의원)	i
인사말	이 정 미 (국회의원)	iii

발제문

발제문 1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강 지 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1
발제문 2	여성 안전은 생존권: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윤 지 연 (위커스 기자)	15

토론문

토론문 1	스토킹처벌법 현황	
	송 란 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31
토론문 2	여성 1인 가구 당사자의 이야기	
	조 혜 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39
토론문 3	여성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	
	곽 수 진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Just Feminist' 회원)	45

인사말



여영국 (국회의원)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토킹 처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여성의 삶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신 우리 정의당의 여성본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처음 토론회 주제와 홍보물을 접하신 분들 중 스토킹처벌법과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혐오와 그로부터 기인하는 수많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다소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정의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사실 대단하고 거창한 법이 아닙니다. 홀로 지내는 여성이 과거의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뿐만 아니라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안전을 위협받고 주거를 침입받는 강력범죄가 대한민국 곳곳에 버젓이 발생하는 현실을,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에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발소리조차도 무서워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침입 범죄의 다수가 스토킹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5만원 미만 과료형 정도의 처벌만 받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20년 가까이 외치고 있는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전히 잠시 논의되는 과정 뿐 실질적 입법 절차는 미뤄지고 있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다수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어떤 것도 다르지 않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라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무서운 일일 순 없습니다. ‘안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외치는 여성

들의 목소리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목소리 또한 당연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과 함께 모이는 지혜가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더 이상 여성들의 주거가 공포로 다가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목소리 냅시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정의당 여성본부와 여영국 의원님 그리고 제가 주최하는 〈스토킹 처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룰 스톱킹 처벌법은 정의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여성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가장 앞 순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 안전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며, 안전은 여성의 현실 그 자체에서 출발한 요구입니다.

윤지연 워커스 편집장님의 오늘 발표문 따르면 주거시설이 아닌 고시원 등의 주택(오피스텔 제외)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 추행 등의 범죄는 2015년 688건에서 2018년 1,048건으로 52.32% 증가했습니다. 그 강력범죄 피해자 중 87%는 여성이며, 이 중 91.7%는 강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피해여성 중 55.6%는 청년 여성이었습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교수님의 오늘 발표문을 봐도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은 전체평균보다 높으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높았습니다.

또한 신림동 사건처럼 낯선 사람만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 직장동료 같은 지인들에 의해 주거가 침입받고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이슈된 사건이 아닌 경우 가해자들이 형량은 낮고 처벌을 피할 구멍은 많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결국 주거를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 시스템을 일부 손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톱킹처벌법은 1인 가구 여성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요청한 안전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것입니다. 안전한 데이트, 안전한 화장실, 안전한 귀가길.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스톱킹처벌법을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발제문 1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강 지 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1인 가구의 범죄피해와 두려움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두 논문의 결과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둡.

-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 강지현 (2019),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2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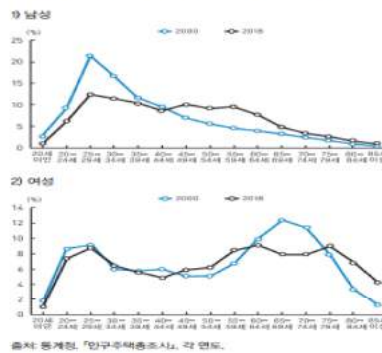
연구배경: 1인 가구 현황

- 1인 가구 증가추세 (통계청, 2019)
 - 2018 주된 가구 유형: 1인 가구(29.3%)
 - 2018 남성 1인가구(291만 가구) < 여성 1인가구(294만 가구)
 - 2000년 대비 남성 1인 가구 급증,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

[그림 II-29] 1인가구 수와 비율,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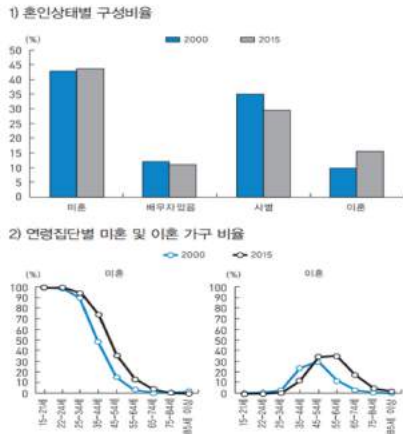


[그림 II-31] 1인가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200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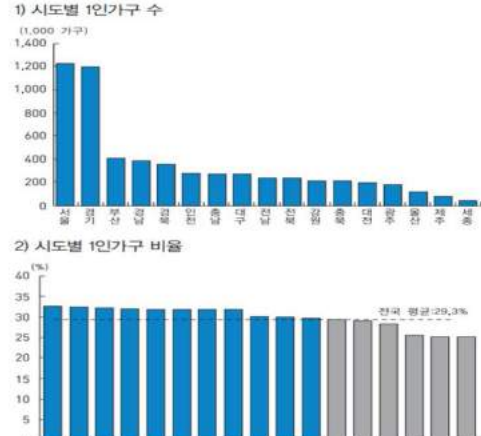
연구배경: 1인 가구 현황

[그림 II-32] 1인가구의 혼인상태 분포, 2000, 2015



주: 1) 2000년 자료는 미상 제외, 2015년 자료는 20% 표본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8.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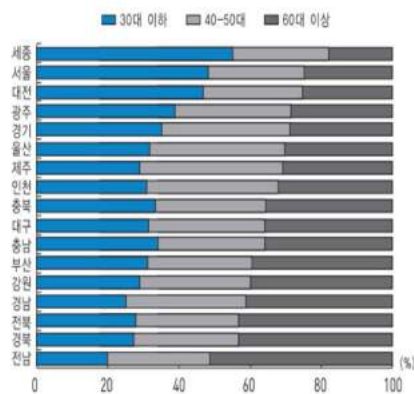
[그림 II-33] 1인가구의 시도별 분포, 2018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시도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연구배경: 1인 가구 현황

[그림 II-34]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 분포, 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 만혼 및 비혼, 이혼 등의 이유와 고령화요인과 함께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전국 1인가구 비율과 대도시의 1인 가구 비율차이는 크지 않으나 1인 가구의 규모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성이 강하게 나타남
- 대전, 서울, 세종: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음
- 경남북, 전남북, 강원 등: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
- (1인 가구의 삶의 질, 통계청, 2019)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

- 1인 가구의 소비형태
 - (심영, 2002; 성영애, 2013 등)
- 독거노인
 - (예를 들면 성지미·이윤정, 2001),
- 건축학에서의 1인 가구 주거형태
 - (황성은, 강부성, 박지연 2013 등)
- 범죄학에서의 1인 가구 취약성
 -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례보도를 통한 1인 여성가구의 피해, 취약성, 두려움 등이 주목받음
 - 가구범죄피해에서 1인 가구여부를 가구특성변수로 활용(김지선·주익현, 2015; 박성훈, 2011 등)
 - 1인 가구의 범죄피해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음
 - 최근 소수 연구들이 1인가구의 피해와 두려움을 실증적으로 분석



1인 가구의 안전, 피해, 두려움

- 연구문제
 - 1인 가구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 혹은 취약한가?
 - 1인 가구 vs. 2인 이상 가구
 - 유형별 1인 가구의 비교
- 1인 가구 정의
 -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가구원이 1인인 가구
- 1인 가구 유형 분류
 - 인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인 가구를 구별
 - 청년 1인 가구: 33세 이하
 - 평균 초혼연령 남 32.6세 여30세, 모(母) 평균 출산연령 32.2세 (2015)
 - 미혼 혹은 비(非)출산 1인 거주자를 대표
 - 노인 1인 가구: 65세 이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정의(65세 이상인 자)
 - 자녀의 양육이나 근로 등으로부터 벗어난 시기
 - 65세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24.7%를 차지 (통계청, 2018)



연구방법

- 분석자료
 - 범죄피해조사 제 3차(2012)와 제 4차(2014)조사 활용
 - 조사내용과 방법, 모집단과 표집틀 동일
 - 모집단:
 -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집틀:
 -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
 - 제 3차(2012) 조사: 6,300가구의 13,317명 조사
 - 제 4차(2014) 조사: 6,960가구의 14,976명 조사
 - 1인 가구(원) 만으로 분석자료를 구성
 - 총 3,117명의 1인 가구(주/원)
 - 제 3차(2012) 조사: 1,566명의 1인 가구(원)
 - 제 4차(2014) 조사: 1,551명의 1인 가구(원)



- 주요변인의 측정과 자료분석 방법
 - 종속변수1: 범죄피해 여부
 - 전체범죄피해를 분석하고 추가로 주거침입 피해를 분석
 - 전체범죄피해:
 - 신체범죄피해(강도, 폭행, 성폭행)와 재산범죄피해(절도, 사기, 손괴 등)을 모두 포함
 - 주거침입피해:
 -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 주거침입을 포함하는 주거침입의 모든 피해유형을 포함
 - 종속변수2: 범죄두려움
 - 일반적 두려움:
 - 취약성에 대한 일반화된 느낌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 구체적 두려움:
 - 특정한 범죄유형(절도, 사기, 스토킹, 폭행등등)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주거침입 두려움
 - 5점척도로 측정 (1:전혀 두렵지 않다 ~ 5:매우 두렵다)
- 개인/가구/지역특성 변수를 고려



가구유형별 피해율 차이 확인

		1인 가구	부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3세대 이상	형제자 매로만	조부모 +손자 녀	비혈연/ 기타	전체
전체 피해	있음	5.4%	2.6%	3.8%	3.9%	3.2%	3.7%	5.6%	4.7%	3.7%
	없음	94.6%	97.4%	96.2%	96.1%	96.8%	96.3%	94.4%	95.3%	96.3%
신체 피해	있음	0.3%	0.1%	0.1%	0.2%	0.1%	0.0%	1.1%	0.3%	0.2%
	없음	99.7%	99.9%	99.9%	99.8%	99.9%	100%	98.9%	99.7%	99.8%
재산 피해	있음	4.8%	2.4%	3.3%	3.5%	2.8%	3.7%	4.5%	4.5%	3.3%
	없음	95.2%	97.6%	96.7%	96.5%	97.2%	96.3%	95.5%	95.5%	96.7%
주거 침입	있음	1.9%	1.6%	1.4%	1.3%	1.5%	0.9%	3.6%	1.5%	1.6%
	없음	98.1%	98.4%	98.6%	98.7%	98.5%	99.1%	96.4%	98.5%	98.4%



분석 결과 - 1인 가구 유형별 피해율 비교

	33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34-64세 성인 1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
개인범죄피해율	8.4	6.4	3.2
신체범죄피해율	0.8	0.2	0.2
재산범죄피해율	6.9	5.8	2.9
주거침입피해율	1.8	2.0	1.7



분석 결과 - 개인피해의 로짓분석

		청년 1인 가구 (33세 이하)		성인 1인 가구 (34-64세)		노인 1인 가구 (65세 이상)	
		b	Exp(B)	b	Exp(B)	b	Exp(B)
통제	성별(여)	0.822	2.276*	0.313	1.395	-0.416	0.660
	연령	-0.006	0.994	0.028	1.015	0.034	1.035
	교육수준	0.415	1.514*	0.199	1.222	0.228	1.257
개인특성	직업 있음	0.149	1.160	0.639	0.739	-0.163	0.850
	개인 매력성	-0.005	0.995	-0.078	1.105	0.049	1.050
	개인 노출도	0.063	1.065	0.099	0.921	0.139	1.149
	개인 회피성	-0.097	0.908	0.007	1.121*	0.031	1.031
지역특성	취약성 인식	0.450	1.568**	0.620	0.987	0.468	1.596**
	비공식사회통제	-0.140	0.869	0.090	0.826	-0.066	0.936
	사회 결속	0.121	1.128	0.040	1.912***	0.094	1.099
	물리적 무질서	0.296	1.345**	0.058	0.915	0.114	1.121
	사회적 무질서	-0.193	0.825	-0.029	1.077	-0.027	0.973
	지역범죄 추세	0.394	1.482	0.065	1.075	0.479	1.615
chi square		39.233**		29.898**		22.633***	

분석 결과 - 주거침입피해의 로짓분석

		청년 1인 가구 (33세 이하)		성인 1인 가구 (34-64세)		노인 1인 가구 (65세 이상)	
		b	Exp(B)	b	Exp(B)	b	Exp(B)
통제	성별(여)	2.418	11.226*	0.045	1.046	0.752	2.122
	연령	0.032	1.033	0.070	1.072*	0.079	1.082*
	교육수준	0.773	2.167	0.121	1.129	-0.097	0.907
가구특성	취약성 인식	0.366	1.442	0.667	1.949**	0.631	1.880**
	가구소득	-0.510	0.600	0.228	1.256	0.278	1.321
	거주지 영입	-13.874	0.000	0.300	1.349	-16.558	0.000
	가구노출	-0.120	0.887	-0.357	0.700	0.619	1.857**
	가구 방법 수준	-0.455	0.634*	0.053	1.054	-0.155	0.856
	가구 방법 활동	0.178	1.195	0.403	1.496	0.146	1.157
	아파트/오피스텔	1.002	2.722	-2.012	0.134*	-17.097	0.000
	주택 소유	-16.156	0.000	0.099	1.104	0.601	1.824
지역특성	비공식 사회통제	0.010	1.010	0.267	1.306	-0.373	0.689*
	사회결속	-0.340	0.712	-0.190	0.827	0.053	1.055
	물리적 무질서	-0.182	0.833	0.354	1.424	-0.009	0.991
	사회적 무질서	-0.038	0.963	0.069	0.934	0.001	1.001
	지역범죄 추세	0.450	1.568	-1.348	0.260	1.693	5.437*
chi-square		24.195*(0.085)		44.114***		48.051***	

소결1: 1인 가구의 범죄 피해

- 1인 가구의 전체 피해율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음
 - 이러한 높은 피해율은 전체범죄피해율은 물론, 신체피해와 재산피해율, 주거침입 피해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재산피해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1인 가구 유형별 비교
 - 노인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나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은 전체평균보다 높음
 - 즉,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전체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을 높이는 결과**
 - 전체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모든 세부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1인 가구의 구별 필요성을 의미하는 결과



- 선행연구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였던 1인 가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질적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발견
 - 전체피해율에서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은 8.4%로 성인 1인 가구(6.4%), 노인 1인 가구(3.2%)보다 월등히 높음
 - 피해율뿐만 아니라 성별구성과 교육수준 등의 개인특성과 가구소득과 주거형태, 가구의 방범수준과 방범활동 등 가구관련 특성에서도 유형별 1인 가구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여성가구의 비율과 학생과 주부, 무직자 등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노인 1인 가구’는 자택소유의 비율은 72.8%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지만,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 방법수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주거형태에서 오는 보호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과 33세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범죄피해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검증
 -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25-29세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70-75세에 다시 증가
 - 1인 가구 연구는 29세 미만의 청년층 또는 70세 전후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 특히,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높음
 - 이러한 성별에 따른 취약성 차이는 성인이나 노인 1인 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오피스텔의 주거침입범죄 보호력은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34-65세의 ‘성인 1인 가구’에서만 발견됨
 -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적 맥락에서 주거형태(아파트 및 오피스텔거주)가 가구범죄피해의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김지선·주익현, 2015; 박성훈, 2011)
 - 청년과 노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31.5%와 25.5%로 성인의 37.7%보다 낮음
 - 이러한 발견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이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후행연구의 필요성을 의미.



분석결과- 가구유형별 두려움 수준 비교

1. 전혀 두려워하지 않음 2. 매우 두려워함		2인 이상	1인가구 전체	청년 1인 가구	성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전체
일반적 두려움	밤 혼자 집에서	2.26	2.23	2.36	2.22	2.18	2.25
	밤 혼자 동네에서	2.53	2.39	2.63	2.41	2.27	2.52
구체적 두려움	절도피해 두려움	2.27	2.19	2.37	2.22	2.08	2.26
	강도피해 두려움	2.20	2.14	2.29	2.17	2.04	2.19
	폭행피해 두려움	2.22	2.17	2.36	2.22	2.04	2.22
	사기피해 두려움	2.24	2.18	2.31	2.23	2.08	2.23
	성폭력 두려움	2.09	1.94	2.32	1.99	1.71	2.08
	손괴피해 두려움	2.15	2.10	2.29	2.14	1.98	2.15
	스토킹 두려움	2.08	2.00	2.19	2.02	1.90	2.08
	주거침입 두려움	2.38	2.35	2.61	2.35	2.22	2.38
계 (명)		25176	3117	606	1183	1328	28293



분석결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회귀분석

	청년 1인 가구		성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성별(여)	5.130***	.454	3.445***	.320	1.787***	.395
연령	.148*	.066	-.081**	.024	-.040	.025
교육수준	-.097	.238	.039	.142	-.272	.198
혼인상태(기혼)	.104	.970	.436	.411	1.459	1.370
범죄피해 경험	1.572*	.777	2.351***	.623	2.774**	.819
고용 (직업 있음)	-1.182*	.563	-.305	.383	.470	.352
물리적 무질서	.778*	.333	.823***	.228	.447*	.209
사회적 무질서	1.337***	.341	1.161***	.236	2.057***	.246
사회결속	.099	.073	.085	.047	.038	.049
비공식 사회통제	.146	.101	.113	.072	.073	.072
경찰 신뢰도	-.435	.290	-.271	.219	-.724**	.214
보도 노출	1.031***	.257	.786***	.182	.555***	.150
도시 거주	-.277	.610	.653	.380	.451	.350
F	20.679***		22.316***		17.864***	
N	N=606		N=1,183		N=1,328	



분석 결과 - 주거침입 두려움의 회귀분석

	청년 1인가구		청년 1인가구 (B)		성인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b	β	b	β	b	β	b	β
성별(여)	.857***	.364	3.131**	1.329	.610***	.278	.368***	.134
연령	.001	.004	.001	.002	-.010*	-.079	.000	.000
교육수준	.022	.017	.020	.016	-.025	-.030	-.045	-.035
혼인상태	.159	.031	.164	.032	.062	.026	.278	.028
주거침입 피해	.488	.056	2.541*	.292	1.242***	.156	.884***	.098
가구소득	-.056	-.057	-.054	-.054	-.024	-.032	.023	.012
가구 소유/자가	.229	.050	.229	.049	-.040	-.017	.004	.002
아파트/오피스텔	.098	.039	.102	.041	-.020	-.009	-.055	-.022
주거지 영업	.815	.063	.815	.063	-.163	-.038	-.275	-.031
가구방법수준	-.025	-.040	-.027	-.043	-.035	-.064	-.019	-.037
물리적 무질서	.228***	.165	.232***	.167	.207***	.153	.073	.055
사회적 무질서	.161*	.115	.155*	.110	.171***	.125	.337***	.229
사회결속	.009	.025	.009	.024	-.003	-.010	-.005	-.019
비공식 사회통제	.018	.036	.016	.033	.042**	.092	.000	-.001
경찰 신뢰도	-.176**	-.122	-.177**	-.123	-.053	-.036	-.098*	-.066
보도 노출	.238***	.180	.240***	.182	.125***	.099	.141***	.129
도시 거주	.074	.023	.071	.022	.053	.021	.021	.010
여성*침입피해			-2.263*	-1.028				
adj. R square	.302		.307		.189		.119	
F	16.417***		15.878***		17.155***		11.579***	

소결2: 1인 가구의 두려움

- 주요 결과
 -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낮은 범죄피해 두려움 수준을 보임
 - 1인 가구의 낮은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주거침입 두려움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1인 가구 유형별 비교
 -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두려움과 노인 1인 가구의 낮은 두려움 수준 차이
 - 전체 1인 가구(3117) 중 노인 1인 가구(1328)의 비중이 높아, 노인의 낮은 두려움이 전체 1인 가구의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결과 초래
 - 서구와 달리 노인이 낮은 범죄두려움 수준을 보이는 국내 선행연구결과와 일치
 - 1인 가구 세부 유형별 비교의 중요성 시사

- 1인 가구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범죄피해두려움 영향요인
 - **성별**의 공통된 영향력
 -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두려움 수준을 보임
 - **피해자의 높은 두려움**
 - 범죄피해자는 피해경험이 없는사람에 비해 높은 두려움 수준을 보임
 -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보도노출** 빈도
 - 거주하는 동네의 무질서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범죄관련 보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음
- 1인 가구 유형별 구분되는 특성
 - 33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연령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 높아지나, 35-64세 성인 1인 가구에서는 연령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 낮아짐. 노인의 낮은 범죄두려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 청년 1인 가구에서는 무직자의 범죄두려움이 더 높음
 - 노인 1인 가구에서는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범죄두려움을 낮춤



- 주거침입 두려움 영향요인 분석결과
 - 1인 가구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영향력
 - **여성의 높은 주거침입 두려움**
 - **주거침입 피해 경험자의 높은 주거침입 두려움**
 - 거주하는 지역특성의 영향력
 - 주거지 방법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영향력 있음
 - 거주하는 동네의 무질서 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 높음
 - 선행연구에서 밝힌 가구주나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의 낮은 두려움 발견되지 않음



연구결과의 함의

- 1인 가구의 이질적 특성
 -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과 높은 두려움 수준
 - 노인 1인 가구의 낮은 두려움
-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이해 필요성
 -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청년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피해율
 - 피해율과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높은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 주거지 방법환경과 거주하는 동네특성에 대한 고려
 - 주거침입 피해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 무질서에 대한 인식



연구의 한계

- 연령만을 기준으로 1인 가구를 분류, 따라서,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구별기준인 경제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1인 가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취약성(예를 들면,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
- 취약성 인식이나 회피행동이 피해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오히려 범죄피해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과 사회적 결속이나 취약성 인식 수준이 실제로 다른 특성변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
- 1인 가구의 대표성 문제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 노인 1인 가구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분석에 영향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발제문 2

여성 안전은 생존권: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윤지연
(워커스 기자)

발제문 2

여성 안전은 생존권: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윤지연 (워커스 기자)

1. 1인 가구는 여성이 더 많다

1) 1인 가구 규모 변화

(통계청,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가구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9,111 (100.0)	19,368 (100.0)	19,674 (100.0)	19,816 (100.0)
1인가구	2,224 (15.5)	3,171 (20.0)	4,142 (23.9)	5,203 (27.2)	5,398 (27.9)	5,619 (28.6)	5,788 (29.2)

통계청 2018년 인구총조사

-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2000년 15.5%에서 2018년 29.2%로 13.7%p 증가함.
- 일반 가구가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하는 동안,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8년 579만 가구로 160.2% 증가함.

2) 1인 가구 성별 변화

(통계청, 단위: 천 가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1,279	1,753	2,218	2,610	2,722	2,827	2,942
남성	945	1,418	1,924	2,593	2,676	2,792	2,906

- 여성 1인 가구 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남성보다 많음.
- 1인 가구 성별 증가폭은 남성이 2000년에서 2018년까지 207.5%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

간 130.0% 증가함.

- 그럼에도 2018년 기준 성별 1인 가구 비율은 여성이 50.30%, 남성이 49.69%로, 여성 1인 가구 수가 남성 보다 3만6000가구 많음.

2. 여성 1인 가구 다수는 청년과 고령층이다.

1)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2018년, 통계청, 단위: 가구)

행정구역별	성별	1인가구 수	20세미만	20~30대	40~50대	60~70대	80대 이상
전국	남	2,906,320	27,623	1,179,823	1,088,893	538,589	71,398
	여	2,942,274	30,531	832,858	749,772	1,002,212	326,901
서울	남	581,944	5,629	290,991	188,123	87,363	9,838
	여	647,477	8,858	287,500	144,514	164,845	41,760

- 전국적으로 여성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70대(약 100만 가구), 20~30대(약 83만 가구) 순임.
- 반면 여성 1인 가구 중 22%가 거주하는 서울지역의 경우, 20~30대의 여성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음.
- 서울지역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수 비율은 52.66%, 남성은 47.33%로 여성 가구가 5.21%p (6만5533가구) 많음.

(단위: 가구, 통계청)

행정구역별	연령별	2018년		
		계	남성	여성
전국	합계	5,848,594	2,906,320	2,942,274
	20세 미만	58,154	27,623	30,531
	20~24세	402,476	183,145	219,331
	25~29세	617,468	359,636	257,832
	30~34세	522,405	333,818	188,587
	35~39세	470,332	303,224	167,108
	40~44세	400,122	255,715	144,407
	45~49세	464,099	290,104	173,995
	50~54세	450,375	268,111	182,264
	55~59세	524,069	274,963	249,106
	60~64세	494,506	225,311	269,195
	65~69세	375,398	141,253	234,145
	70~74세	330,897	97,349	233,548

행정구역별	연령별	2018년		
		계	남성	여성
	75~79세	340,000	74,676	265,324
	80~84세	246,166	45,461	200,705
	85세 이상	152,127	25,931	126,196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세 미만과 20~24세의 여성 1인 가구 수가 남성보다 각각 10.5%, 19.75% 많음.
-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64세이며, 그 다음이 75~79세, 25~29세 순임.
- 결과적으로 여성 1인 가구의 특징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퇴직을 앞두고나 이미 퇴직한 고령층이 가장 많다는 것임.

행정구역별	연령별	2018년		
		계	남성	여성
서울	합계	1,229,421	581,944	647,477
	20세 미만	14,487	5,629	8,858
	20~24세	109,213	39,816	69,397
	25~29세	195,284	97,792	97,492
	30~34세	155,740	87,035	68,705
	35~39세	118,254	66,348	51,906
	40~44세	84,910	48,293	36,617
	45~49세	88,852	52,190	36,662
	50~54세	75,442	44,348	31,094
	55~59세	83,433	43,292	40,141
	60~64세	82,818	35,991	46,827
	65~69세	63,468	22,888	40,580
	70~74세	56,393	16,656	39,737
	75~79세	49,529	11,828	37,701
	80~84세	31,917	6,298	25,619
85세 이상	19,681	3,540	16,141	

- 서울지역의 경우, 20세 미만과 20~24세 여성 1인 가구 수가 같은 연령 남성 가구 수 보다 무려 57.36%, 74.29% 많음.
- 25~29세 역시 여성과 남성 1인 가구 수가 별 차이 없음.
- 특히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중 20대의 비율이 25.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18.63%임.
- 결과적으로 서울지역 여성 1인 가구 중 44.40%가 20~30대의 청년층임.
- 이밖에도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구,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여성 1인 가구 수가 많음.

3.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난다.

1) 성별에 따른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

(2018년, 통계청, 단위: 가구 수)

행정 구역별	성별	1인가구 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전국	남	2,906,320	1,439,547	755,843	42,371	257,199	67,907	343,453
	여	2,942,274	1,322,533	994,917	55,952	280,913	52,707	235,252
서울	남	581,944	262,165	100,969	7,514	91,526	23,422	96,348
	여	647,477	251,165	163,555	11,166	113,652	19,913	88,026

- 여성 1인 가구의 거처 종류를 살펴보면, 44.94%는 단독주택¹⁾, 33.81%는 아파트, 9.54%는 다세대주택²⁾, 7.99%는 주택이외의 거처³⁾, 1.90%는 연립주택⁴⁾, 1.79%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⁵⁾에 거주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여성 1인 가구 중 13.59%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음.

2) 성별, 연령,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

(2018년, 통계청, 단위: 가구 수)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전국	남	20세미만	20,015	3,534	188	1,243	1,016	1,627
		20~30대	562,054	283,639	14,138	118,124	31,388	170,480
		40~50대	524,449	300,150	16,966	93,446	24,172	129,710
		60~70대	291,881	147,204	9,683	40,039	10,491	39,291
		80세이상	41,148	21,316	1,396	4,347	840	2,345
	여	20세미만	21,403	3,692	186	1,648	1,231	2,371
		20~30대	370,814	189,452	9,774	96,212	22,895	143,711
		40~50대	275,570	314,959	14,775	76,677	13,026	54,765
		60~70대	459,846	388,159	25,117	88,492	12,835	27,763
		80세이상	194,900	98,655	6,100	17,884	2,720	6,642

- 1) 단독주택: 단독소유가 가능한 주택으로,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 주택인 단독주택과 1인 소유의 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2) 다세대주택: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4층 이하의 건물로 연면적 660㎡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
- 3)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오피스텔 등이 포함됨.
- 4) 연립주택: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4층 이하의 건물로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건물.
- 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었지만,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춘 건물.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서울	남	20세이하	3,665	498	49	468	359	590
		20~30대	124,799	39,186	3,036	51,368	14,389	58,213
		40~50대	86,699	36,584	2,649	27,459	6,211	28,521
		60~70대	43,060	20,978	1,535	10,963	2,302	8,525
		80세이상	256,965	3,723	245	1,268	161	499
	여	20세이하	5,800	736	49	695	587	991
		20~30대	111,517	39,430	2,948	52,907	13,009	67,689
		40~50대	54,689	42,969	2,643	27,337	3,215	13,661
		60~70대	62,825	62,704	4,585	27,530	2,570	4,631
		80세이상	16,334	17,716	941	5,183	532	1,054

- 연령이 낮을수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율이 높음.
- 전국적으로 20~30대 여성 1인 가구 중 44.52%는 단독주택, 22.74%는 아파트, 17.25%는 주택 이외의 거처, 11.55%는 다세대주택, 2.74%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17%는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여성 1인 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많음.
- 서울시에서는 20~30대 여성 1인 가구 중 38.78%가 단독주택, 23.544%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18.40%가 다세대주택에, 13.71%가 아파트에, 4.52%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1.02%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중 76.89%가 20~30대임.
- 특히 서울시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20~30대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53.76%로 남성(46.23%)보다 높음.
- 구체적인 연령대로 접근 해 보면, 전국의 1인 여성 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령대는 25~29세(54,271가구)이며, 그 다음이 30~34세(35,257가구)임.
- 서울 거주 1인 여성 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령대는 25~29세(26,441가구)이며, 그 다음이 30~34세(17,224가구), 20~24세(13,59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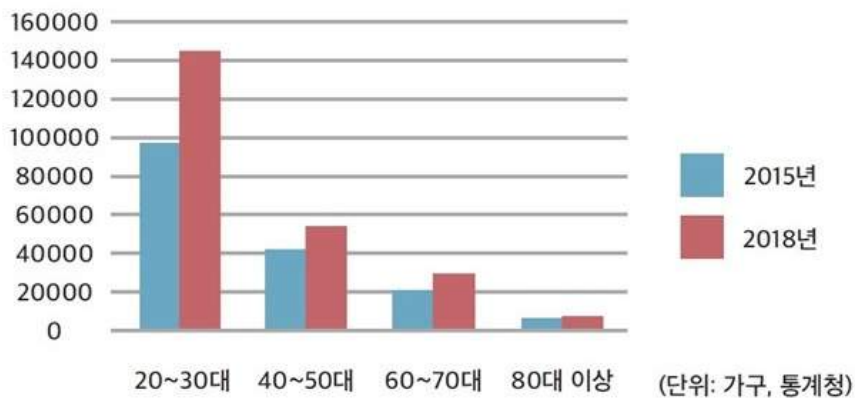
3) 서울시 '주택 이외의 거처' 1인 가구 중 오피스텔 제외 현황

(2018년, 통계청, 단위: 가구 수, %)

	성별	연령	주택이외의 거처 계	오피스텔	오피스텔 제외
서울특별시	남	20~39세	73,810	49,166	24,644(42.88)
		40~59세	47,283	26,241	21,042(36.61)
		60~79세	17,640	6,921	10,719(18.65)
		80세 이상	1,285	556	719(1.25)
		계	140,630	83,161	57,469(100)
	여	20~39세	80,382	60,569	19,813(63.07)
		40~59세	22,561	16,088	6,473(20.60)
		60~79세	7,366	3,512	3,854(12.26)
		80세 이상	1,722	598	1,124(3.57)
		계	112,765	81,352	31,413(100)

-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서울시 1인 가구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64.65%, 여성이 35.34%임.
- 서울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율은 27.85% (3만1,413가구)임.
- 이들 중 다수인 63.07%(1만9,813가구)는 20~30대임.

4)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별 변화 추이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16만7088가구에서, 2018년 23만5252명으로 41% 증가했음.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령대인 20~30대의 비율도 2015년 40.8%에서 2018년 44.4%로 증가했음.

4.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여성은 소득도 불평등하다.

1)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소득 수준

(2017년, 통계청)

		가구수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만원 이상
전국	합계	369,501	212.6만원	22%	29.3%	25.4%	13.1%	10.2%
거처 유형	숙박업소의 객실	30,411가구	133.8만원	44.7%	34.1%	11.6%	8.4%	1.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	138.1만원	44%	29.7%	17.2%	4.3%	4.8%
	고시원,고시텔	151,553가구	180.5만원	25.6%	30.6%	28.5%	10.9%	4.4%
	기타	180,936가구	255.5만원	14.4%	27.4%	25.3%	16%	16.9%
전용 면적	6.5㎡미만	35,453가구	125.9만원	51.7%	31.3%	12.6%	2.5%	1.9%
	6.5~14㎡미만	75,228가구	147.7만원	35.1%	36.1%	19.3%	7.4%	2%
	14~26㎡미만	85,790가구	200만원	16.5%	28.8%	35.1%	14.4%	5.2%
	26~36㎡미만	16,798가구	215.3만원	21.7%	23.4%	28.5%	16%	10.5%
	36㎡이상	11,685가구	207.6만원	25.3%	29.1%	22%	12.1%	11.5%
가구 원수	1인	265,600가구	183만원	27.3%	31.3%	25%	10.3%	6%
	2인	73,689가구	266.2만원	10.9%	27.6%	25.3%	19.5%	16.8%
	3인	19,125가구	321.9만원	3.8%	17.6%	31.2%	19.4%	28%
	4인 이상	1,1087가구	377.3%	0.9%	12.5%	24.2%	24.4%	37.9%
성별	남성	271,665가구	227.3만원	20.7%	26.5%	25.6%	15.2%	12%
	여성	97,836가구	171.7만원	25.9%	37%	24.7%	7.1%	5.4%
연령	30세미만	88,140가구	155.8만원	31.4%	33.7%	26.4%	6.2%	2.2%
	30~39세	49,450가구	235.1만원	9.5%	23.5%	38.4%	20%	8.6%
	40~49세	49,071가구	245.1만원	11.3%	26.5%	30.2%	17.4%	14.6%
	50~59세	78,073가구	263만원	13.1%	30%	23.2%	16.7%	17%
	60세이상	104,766가구	196.9만원	31.8%	29.1%	17.6%	10.8%	10.7%

- 주택 이외의 거처의 유형은 고시원 및 고시텔이 41.01%, 숙박업소의 객실이 8.23%,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가 1.78%, 기타가 48.96%임. 이들 중 51.3%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며, 86.8%가 14㎡미만 규모의 거처에서 살고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83만원임. 성별에 따라 소득 격차도 나타남.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27.3만원 인데 반해, 여성은 171.7만원임.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55.6만원 낮음.
- 특히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남성의 비율이 47.2%인 반면, 여성 비율은 62.9%임.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28.35%로 가장 많고, 30세 미만이 23.85%로 두 번째로 많음.
-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세 미만으로 평균 155.8만 원임.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비율도 30세 미만이 65.1%로 가장 높음.

2) 주택 이외의 거처 월세가구의 월세

(2017년, 통계청)

		가구수	평균월세	10만원미만	10~15만원	15~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만원이상
성별	남성	119,438가구	32.6만원	0.8%	2.8%	4.6%	31.2%	33.3%	27.5%
	여성	49,818가구	33.1만원	1.5%	4.4%	3.2%	20.9%	36.3%	33.8%

-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 중 여성의 평균 월세가 0.5만원 더 높음. 이는 여성 거주자의 월세 비 양극화가 남성보다 뚜렷하기 때문임. 실제로 15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 구간의 월세 거주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3) 서울시 구별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여성 가구 수

(2018, 통계청, 단위: 가구 수)

관악구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남구	은평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3,887	2,473	2,220	1,982	1,966	1,605	1,530	1,300	1,289	1,210
동대문구	서대문구	종로구	송파구	강북구	서초구	중랑구	중구	마포구	강동구
1,152	1,051	971	939	883	873	863	860	791	728
용산구	양천구	노원구	성동구	도봉구					
718	573	543	518	425					

- 2018년 기준,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로 3,887가구임. 뒤를 이어 강서구(2,473가구), 구로구(2,220가구), 성북구(1,982가구), 영등포구(1,966가구) 순임.

5. 주거 침입 범죄는 줄어들었을까

1) 범죄발생 장소

		주택	노상	상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업소	사무실	역, 대합실	교통수단	유원지	학교	금융기관	기타
2015년	살인	59	37	1	3	5	3	0	0	4	1	0	50
	강간,추행	629	924	73	395	342	91	181	812	51	46	1	1,904
2018년	살인	69	24	3	3	8	6	1	1	1	0	0	27
	강간,추행	979	987	170	553	851	114	280	907	57	60	6	1,457

2) 주거침입 강간 추행 등 범죄 발생 현황

(통계청)

	범죄 유형	발생건수	검거건수(검거율)	남자검거인원(명)	여자검거인원(명)
2015년	주거침입강간	110	109(99.1%)	109	0
	주거침입유사강간	16	16(100.0%)	16	0
	주거침입강제추행	156	145(92.9%)	147	0
	주거침입 기타 강간, 추행	52	55(105.8%)	53	0

	범죄 유형	발생건수	검거건수(검거율)	남자검거인원(명)	여자검거인원(명)
2017년	주거침입강간	105	102(97.1%)	117	1
	주거침입유사강간	16	16(100%)	18	0
	주거침입강제추행	158	153(96.8%)	152	1
	주거침입 기타 강간, 추행	26	28(107.7%)	28	0

-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 추행 등의 범죄는 2015년 688건에서 2018년 1,048건으로 52.32% 증가했음.
- 주거침입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발생 건수도 큰 편차가 없을뿐더러,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성인 상황도 변하지 않음.
- 강력범죄 피해자 중 87%는 여성이며, 이 중 91.7%는 강간, 강제추행 피해를 입음. 특히 이들 피해여성 중 55.6%는 청년 여성이며, 주거지(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음. 6)

6.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 1인 가구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공약으로 △‘여성안심주택’과 ‘홈 방범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 제도’ 확대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한 위급 상황 대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실제로 2018년 서울시는 구로구 천왕동에 최초의 ‘여성안심주택’을 건립했지만 96가구에 불과했음. 경북 경산에서도 2019년 초 여성안심주택이 공급됐지만 13가구에 그침. 2017년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여성안심주택’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함. 이후 2019년 초, 국토부가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25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됨.7) 송파구에서 위치를 변경해 금천구에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이 건설된다는 보도였음.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LH 측은 “입주 대상자는 행복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다.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공급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존 여성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 입주민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함.

6)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16

7) 위키리스크한국, 2019.1.25.일자, [단독] 국토부, 올해 여성 안심용 LH 임대주택 250호 공급 계획

- 서울시는 2013년 ‘여성안심특별시’를 표방하며, 여성안심택배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보안관 등의 사업을 이어오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민의 범죄 불안과 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시민들의 범죄 불안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이유가 서울시의 여성범죄예방 정책에는 ‘예방’적 측면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존재함. 여성안심택배는 9.0%,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13.9%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이용 경험 역시 여성안심택배는 9.9%,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3.9%에 불과함.⁸⁾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는 양천구와 관악구 2개 자치구의 여성 1인 가구 250가구에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여성 1인 가구에 디지털 비디오창과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 비상벨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하지만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1.0% 증가하면 5대 범죄가 0.81% 증가하는 반면, 치안시설비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는 0.0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⁹⁾
- 경찰청은 2013년 ‘밤길 여성 안심귀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안심귀갓길 제도를 도입. 하지만 지난해 5월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 2,875곳 중 무려 78.9%(2,268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80.5%(2,314곳)에는 노면 표시도 돼 있지 않았음. 안내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모두 없는 곳은 75.4%(2,167곳)임. 뿐만 아니라 42.5%(1,221곳)에는 비상벨이 없었음. 심지어 여성안심귀갓길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임. 2014년 3,370곳에서 2018년 2,875곳으로 감소함.

7. 여성의 주거권은 생존권

1) 서울시 25개 구별 여성 1인 가구 규모



8) 장진희,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2018.12

9) 장진희,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2018.12

- 서울시 25개 구 중 여성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5만3288가구)임. 그 다음은 강서구(3만9,231가구), 강남구(3만6,009가구) 순임.
- 관악구에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이유는 강남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월세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임.
- 2019년 10월 기준,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의 20㎡ 규모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400~640만 원 사이이며, 월세 가격은 40만 원 가량임.
- 강남구의 경우 13㎡ 규모 초소형 원룸 가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해 80만 원 선. 치안이 불안한 것으로 알려진 1층 원룸 월세 가격은 60~70만 원 선임.

2) 성별 1인 취업 가구

(통계청, 단위: 천 가구, %)

성별	2018		2017		2016		2015	
	취업가구	구성비(%)	취업가구	구성비(%)	취업가구	구성비(%)	취업가구	구성비(%)
계	3,537	100.0	3,431	100.0	3,288	100.0	3,174	100.0
남	2,041	57.5	1,985	57.9	1,904	57.9	1,841	58.0
여	1,496	42.3	1,446	42.1	1,384	42.1	1,333	42.0

- 앞서 살펴봤듯, 서울에 거주하는 20~24세의 여성 1인 가구 수는 1인 남성 가구 수보다 많음. 25~29세의 여성 1인 가구도 남성과 비슷한 규모임. 서울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령대도 25~29세로 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1인 가구 중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보다 15%이상 낮음.

3) 종사자 지위별 1인 가구

종사자지위별	2018년		2015년	
	취업가구	구성비(%)	취업가구	구성비(%)
계	3,537	100.0	3,174	100.0
임금근로자	2,793	79.0	2,459	77.5
상시근로자	1,881	67.3	1,645	66.9
임시/일용근로자	912	32.7	815	33.1
비임금근로자	744	21.0	714	22.5

- 1인 가구 중 임시 및 일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8년 기준 32.7%임.

(통계청)

성별	2018.08			2017.08			2016.08			2015.08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규모 (비중)	비정규직 규모 (비중)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규모 (비중)	비정규직 규모 (비중)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규모 (비중)	비정규직 규모 (비중)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규모 (비중)	비정규직 규모 (비중)
계	20,045 (100.0)	13,431 (67.0%)	6,614 (33.0%)	20,006 (100.0)	13,428 (67.1%)	6,578 (32.9%)	19,743 (100.0)	13,262 (67.2%)	6,481 (32.8%)	19,474 (100.0)	13,166 (67.6%)	6,308 (32.4%)
남	11,171 (100.0)	8,236 (73.7%)	2,936 (26.3%)	11,188 (100.0)	8,242 (73.7%)	2,946 (26.3%)	11,086 (100.0)	8,166 (73.7%)	2,919 (26.3%)	11,007 (100.0)	8,103 (73.6%)	2,903 (26.4%)
여	8,874 (100.0)	5,195 (58.5%)	3,678 (41.5%)	8,818 (100.0)	5,186 (58.8%)	3,632 (41.2%)	8,658 (100.0)	5,096 (58.9%)	3,563 (41.1%)	8,468 (100.0)	5,063 (59.8%)	3,405 (40.2%)

-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매년 남성 대비 15%p 이상 높음. 심지어 2018년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대비 0.1%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1.3% 증가함.

4)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고용형태	성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월 임금총액(천원)	월 임금총액(천원)	월 임금총액(천원)	월 임금총액(천원)
전체근로자	계	3,008	2,882	2,823	2,734
	남	3,552	3,420	3,355	3,264
	여	2,267	2,130	2,064	1,970
정규직근로자	계	3,510	3,363	3,283	3,194
	남	4,007	3,855	3,768	3,669
	여	2,702	2,535	2,448	2,351
비정규직근로자	계	1,755	1,680	1,643	1,570
	남	2,058	1,977	1,934	1,857
	여	1,485	1,414	1,385	1,321

-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 128만5000원 적으며, 정규직의 경우 130만5000원, 비정규직은 57만3000원 적음.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8년 기준 148만5000원에 불과함.
- 취업 준비 청년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월세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안전을 위해 열악한 월세를 벗어나더라도 역세권 등의 지역은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주거 불안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현재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는 여성의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 주거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을 낳음.

5) 가구 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통계청, 단위: %)

가구주 성	소득 구간	2019년	2018년	2017년
남성	1,000만원 미만	3.9	4.5	5.1
	1,000~3,000만원 미만	19.6	20.1	20.7
	3,000~5,000만원 미만	22.6	23.4	23.6
	5,000~7,000만원 미만	18.7	18.1	18.6
	7,000~10,000만원 미만	17.0	17.1	16.7
	10,000만원 이상	18.1	16.8	15.4
여성	1,000만원 미만	24.4	26.3	27.2
	1,000~3,000만원 미만	41.0	40.0	40.3
	3,000~5,000만원 미만	17.4	17.1	16.3
	5,000~7,000만원 미만	8.4	8.0	8.1
	7,000~10,000만원 미만	5.0	5.0	4.8
	10,000만원 이상	3.7	3.7	3.3

- 성별 소득 격차는 가구 특성별 소득 분포에서도 드러남. 2019년 기준,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미만 비율이 3.9%에 불과하지만,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1000만원 미만 비율이 24.4%로 남성의 6배에 달함.
- 취업 기회가 적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음.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근본적인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주거권 역시 보장되지 않음. 만약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택한다 해도 이는 여성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주거 불평등의 문제는 악순환 될 수밖에 없음.
-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비롯해,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 해소,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함.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토론회 1

스토킹처벌법 현황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토론문 1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지난해 우리 사회에는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쳤던 사건들이 크게 알려졌었습니다. 속속 1심 판결 결과도 들려옵니다.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로서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보았습니다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지 그나마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중하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 특히 1인 가구 여성들에게 이러한 범죄 소식은 공포와 두려움을 남겼을 것입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은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신고 소식을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은 “그다음은?”이었습니다. 거주지가 노출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신변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 또 1년 후에 석방됐을 때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토론회의 제목에서처럼 “이사”만이 답일까요.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몇 개의 양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피해만을 보호범주로 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범죄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권 문제를 다루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해온 단체의 활동가로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담겨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며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스토킹범죄 처벌법 입법 현황

아시다시피 스토킹은 입법 공백과 우리 사회의 낮은 의식 속에서 지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소위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되거나 폐기되기만을 반복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법무부 역시 스토킹처벌법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부처와 여성단체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특징

한국 사회의 스토킹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대부분 애인이나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존재, 변화, 발전하며, 그 피해는 신체적 피해부터 사회생활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¹⁾ 이 같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은 스토킹 입법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3.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담겨야 할 것들

1)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스토킹은 공·사 영역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보호범주를 ‘생활영역 전반’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보호 범위를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으로 하여 피해자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스토킹 정의는 포괄적으로

스토킹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포함한 몇 가지 발의된 법안에서의 스토킹 정의규정은 매우 협소하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는 다음²⁾과 같이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를 명문화하여 범죄의

1) 송란희(2018), 현장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범죄 처벌법 입법 방향, 제21차 젠더와 입법 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

2)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에 제안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하 ‘주거지 등’이라 한다)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또는 특정한 장소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바.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3) 피해자 범위,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해야

기존 발의 법안 중에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여성을 스토킹 하던 남성이 그 여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³⁾, 피해여성의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 등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인 또한 피해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4)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던 사건, 전 애인에게 온갖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피해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됐던 사건은 스토킹이 여성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 중 30%가 스토킹이 여성 살해 및 살인 미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⁵⁾.

3) 뉴시스, “법원, 스토킹 남자 출소 후 고소한 여성 아버지 흉기로 찔려 징역 10년 선고”, 2018년 4월 19일자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9_0000286501&cID=10808&pID=10800

4) 연합뉴스, “이별 앙심 보복범죄에 참극 잇따라... 작년 85명 희생”, 2018년 10월 27일 자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7024300051?input=1195m>

5) KBS, “여성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2019년 5월 22일자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06513&ref=A>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은 향후 스토킹범죄의 지속 및 발전 여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시 조치 단계에서 경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유치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벌칙 규정을 두어 이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강화

스토킹은 그 특성상 신고 이후 가해자에 의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백이 없도록 신변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그 외에 고용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 실질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반의사불벌 조항 불포함되어야

반의사불벌 조항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일뿐더러 대부분의 스토킹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데이트 상대·배우자·동거인·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가해한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스토킹범죄의 국가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상의 조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고소에 관한 특례 신설

스토킹 범죄는 수많은 실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생 끝에 이제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입법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응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의당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스톡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토론회 2

여성 1인 가구 당사자의 이야기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토론문 2

고시원에서 원룸까지: 1인 여성 가구의 경험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2019년 말, 당에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는 연락이 왔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큰 고민 없이 내가 말했던 건 “스토킹 처벌법이에요.”였다. 90년생인 나는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드문드문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대개 혼자 살았다. 창문이 있으면 화장실이 없거나 화장실이 있으면 창문이 없는 고시원에서 주로 살았다. 고시원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다. 원룸텔부터 여성전용고시원까지 ‘조금은 다른 공간임’을 어필하는 고시원 세계가 있었고 나는 그 어필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자신이 없어서 매번 ‘그럭저럭한’ 고시원을 선택했다. 그런 내가 ‘1인 여성 가구’라는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이 없었다. 최근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아, 나도 1인 여성 가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였음을 확인할 정도로 무감각했다.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들,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는 현실들,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등이 나의 경험과 맞닿아 이제야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오는 소식들은 일상을 머뭇거리게 하고 멈추게 한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에 급히 짐을 챙겨 지하철을 탔다. 그렇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건 그 사건의 피해자가 충분히 내가 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2019년, 신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집에 가는 길에 뒤쫓아오는 남성들을 마주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변호키를 누르는 남성을 신고해도 별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피해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몫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

그 사건을 접하고 화가 났지만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사는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

질 수 있기에 집의 잠금장치를 추가할 방법을 모색하고 집에 가는 골목길에 절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지 않는, 내가 나로서 노력하는 게 ‘대책’의 전부였다. ‘안전한 일상’을 만들겠다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정책들도 오롯이 개인이 ‘집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을 손에 쥐어주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런 건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야근 후, 집에 가는 길이 무서워서 물품을 구입하던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다. 정치/제도의 역할은 분명 달라야 함에도 안전이 결국 개인의 역할에 좌우될 뿐이며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 역시도 개인의 몫이라는 걸- ‘신림동 사건’은 보여주었다.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사가 정답이에요.”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걸 이름 모르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2. 스토킹, 피해 경험을 넘어 새롭게 정의하기

고시원에 살았을 때였다. 당시 나는 새벽 1시까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어두워서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호프집에서 마주친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오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이 컸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소위 ‘호감’을 표현하는 손님들이 있고 나는 거절하곤 했다. 그럴 때, 호프집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은 “ 좋겠네.”라고 말했지만 내게는 거절한 순간 이미 무서운 일이 되었다. 본인을 불쾌하게 했다거나 호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쫓아온다는 것’은 여성이 처해있는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연속선상의 경험임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일반적인 의미¹⁾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에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토킹범죄 자체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이를 보다 확장해 읽어낼 필요가 있다. 당시 나의 경험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험은 아니나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조차 스토킹범죄의 우려에 대한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감’에 대해 응해야 하는 것 역시 여성 노동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과제였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실제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점 역시 다시 고민해보고 싶다. ‘실제적인 피해’란 대체 무엇일까. 내가 가졌던 두려움에 대한 피해 경험은 이렇게 흩어져도 괜찮은 걸까?

1) 2019년,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서 정의하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아?”

고시원에 살면서 여러 경험이 있었다. 이는 내 경험이기도 하고 나와 같은 고시원을 살았던 여성들이 겪었던 경험이기도 하다. 고시원이라는 특수한 주거 공간에 따른 특징이라기보단 그만큼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고시원 총무, 사장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에 비롯된 일들이 많았다. 고시원에 거주하던 한 남성은 총무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가 (이유는 모르지만) 마스터키를 받게 된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마스터키를 이용해 몇 개의 방에 들어가서 성추행 했다. 신고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를 겪은 이와 그 친구가 총무를 찾아가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방을 빼고 싶다.”고 얘기하자 총무는 말한다. “그 남자에 고시원 옮겼어.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아?” 문제제기하고 싶었지만 또 피해를 입을 까봐 말하지 못하고 결국 이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고시원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타격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게 내가 대학생 때, 겪은 일이었다. 피해자는 친구였고, 신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렇기에 “혼자 사는 여성이 신고가 아닌 이사 가는 일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이었다. 신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부담감이 상당하기에 수많은 여성은 신고하기까지 망설인다. 그리고 오히려 ‘피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며 그 공간을 떠난다. 할 수 있는 게 이사 밖에 없었던, 씁쓸했던 경험이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4.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마련을 통한 안전한 일상의 확보

지금은 고시원이 아닌 원룸에 살고 있다. 정확히 공간이 분리되어있다는 것에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벌써 일어나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다. 밤늦게 퇴근하고 현관문 앞에 왔는데 갑자기 번호키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함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다. 여전히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일들이 부디 내게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다. 1인여성가구라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앞서 언급한 경험들을 다시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고민 끝에 신고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 이를 위해 스토킹 정의가 포괄적으로 될 수 있길, 경찰의 초동대응이 보다 강화되길, 경범죄 정도에 불과한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수위가 엄격하게 강화되길 바란다. 일상을 영위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스토킹 처벌법의 마련은 일상의 안전함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제도가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토론문 3

여성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

곽수진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Just Feminist' 회원)

토론문 3

여성 1인 가구의 불안: 트위터 해시태그에 맡겨둘 수는 없지 않나

곽수진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Just Feminist' 회원)

#이것이_여성의_자취방이라는 2017년 2월 1일 트위터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 여성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졌던 텀블벅 프로젝트 '자취방' 사진집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당시 자취방과 자취하는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되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비판을 담은 트윗도 함께 오갔다. 정도를 넘어선 성적 대상화와 더불어 “여자들 방은 깨끗할 것이다”, “깨끗해야 한다”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반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취방 사진을 #이것이_여성의_자취방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깨끗하고 하얀 침대보, 그 위에 자리 잡은 야릇한 표정과 포즈, 그리고 털 입은 옷은 여성의 자취방에 대한 사회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한다. 한 마디로 사회가 바라보는 여성의 자취방은 낮에는 요조숙녀요, 밤에는 요부이길 바라는 남성 욕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핑크색 환상은 여성 1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은커녕, 철저히 지워내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20대 후반에 취업하면서 자취를 시작한 나는 목돈이 없어 보증금이 저렴한 부천역 인근에 자취방을 잡았다. 부천역 인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살짝 비켜 난 오피스텔이었다. 6평 남짓한 공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피스텔은 이웃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니 복도를 지나가는 수상한 남성이 있으면 현관을 열기보단 한참 밖을 서성이다 들어가곤 했고 나를 특정할 수 없도록 택배는 죄다 회사로 받아야 했다. 한번은 차를 빼달라며 자정이 다 되어 누가 문을 두들겼다. 당시 나는 차가 없었다. 상식적으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지 누가 문을 두들기나. 이런 생각이 오가는 찰나 문밖의 남성은 다시 한번 거칠게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그 문을 열었을 것이다. 바로 경찰을 불렀고 그는 경찰이 오기까지 내내 문 앞에 있었다. 후에 경찰은 취객이라 내게 전했다, 한동안 귀갓길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유행한 저급한 말 중엔 “잘 취하고 자취하는 여자가 최고”라는 말도 있었다. 사회초년

생이었던 나는 회사 회식에 꽤 열심히 참석하는 편이었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이것이 사회생활이구나 생각도 해가며 회식에 불참하는 다른 사원들과 달리 내게는 좋은 평판이 있겠거니 하는 기대감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 때와 같이 2차, 3차로 이어진 회식의 끝에 부장이 택시를 같이 타자며, 태워다 주겠다 했다. 우리 집 앞에 택시가 도착했고 그럼 잘 들어가시라 인사를 드리고 내렸는데 부장이 따라 내렸다. 그리곤 커피 한 잔만 먹고 가자 했다. 말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차린 나는 집에 커피가 없다, 이 앞 편의점 가서 마시자 했지만, 부장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은 “수진씨, 정말 이러기야?”하곤 돌아갔다. 집에 커피 믹스를 안 사둔 게 천만다행인 날이었다. 물론 다음 날부터 시작된 부장의 집요한 괴롭힘 덕분에 곧 이직해야 하긴 했다.

당 활동을 하면서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지역 모임을 마치고 청년 당원들과 함께 집에서 간단한 뒤풀이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청년위원장이 술에 취해선 집요하게 재워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질러 당기위에 제소되었고 현재 당원 자격 정지 상태이다. 당시 당기위 제소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일이 알려졌을 때 일부 당원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한 것이 무슨 잘못이나, 집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보통 사이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며 그를 변호하였다. 좋아하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다 돌아가는 내용의 유행가를 읊으며 이것도 그럼 범죄냐, 전도유망한 청년위원장이 꽃뱀에게 당한 것이다 등의 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일을 겪고 나는 이사를 감행했다. 부천역 인근에서 강남 개포동 재개발 아파트로 옮겼다.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살게 된 것이다. 더 이상 귀갓길에 취객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복도식 아파트는 내 집 앞에 서성이는 수상한 인물을 만날 가능성을 줄였다. 만나게 된다 한들 그를 충분히 의심하고 피할 가능성을 높였다. 아파트를 정하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몇 층을 보여줄까 물었다. 개포동의 재개발 아파트들은 5층 아파트들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중개인은 1층을 권했지만 나는 한사코 5층을 고집했다. 복도의 괴한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누군가 5층까지 올라오면 내 집 아님, 맞은편 집 방문객인 상황이 내게는 훨씬 안심이었다.

한국에서는 소위 ‘스몰토크’가 호구조사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이는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등등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디에 사냐이다. 문제는 이 ‘어디에 사냐’ 문제가 질문자의 예상과 다를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다.”와 같은 답이 나올 경우, 대부분 “부모님은요?”라고 되묻는다. 이사를 감행하고 한 동안 자취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

는데, 그때마다 들통이 나 상대의 ‘지금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것인가’하는 표정을 되받곤 그나마도 그만두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여성 지인들은 자취 사실을 숨기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연기하고 있다. 남성 지인들의 경우 자취방이 지인들의 아지트가 될 거라며 자취 사실을 숨기겠단 소릴 가끔 하는데, 그나마도 말에 그칠 뿐인 데다 여성들의 이유와는 꽤 차이가 크다.

재작년 여름, 오랜 1인 가구 생활을 청산하고 남성인 친구와 함께 살기를 결정했다. 각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고 나는 개포동에서 곧 허물어질 16평 아파트에 살았고, 그는 신림동에서 5평 오피스텔에 살았기에 둘이 합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만들어 이제는 좀 사람같이 집 같은 데서 살아보자고 내린 결정이었다. 주거 환경의 개선이 그의 이사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내 목적은 달랐다. 주거 환경의 개선, 그리고 안전이었다. 친구와 함께 살면서 걱정 없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택배를 집에서 받고, 수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친구를 앞세울 수 있게 되었다. 자취를 그렇게 오래 하고도 이 안전이 주는 안락함이 어찌나 컸던지 이사 온 지 석 달 만에 친구가 해외 출장을 가자, 사흘 내리 밤새 악몽을 꿔다. 밤새 문을 잠그는 꿈이었다. 물론 남자인 친구와 같이 살아서 안 좋은 점도 많다. 그중 제일 기분 나쁜 건 집주인이 나에게겐 하대하는데 꼬박꼬박 친구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에 대한 답이 ‘둘이 살기로 결정했다’가 되어 조금 난망하다. 다만 나의 경우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여성 1인 가구 문제에 있어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시선들이 문제 발생과 해결에 작용하는 지점들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 부천역 인근과 개포동이 각각 드러내는 ‘거주하는 동네의 무질서 수준’이 여성 1인 가구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사례가 실재한다는 점을 짚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문제는 전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문제이나, 이를 통해 파생되는 이차적 피해는 성별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주거 정책이 단순히 열악한 환경의 개선에 그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에게는 5평 자취방을 10평 자취방으로 바꿔주는 정책은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있겠지만, 여성에게는 그저 좀 더 넓어진, 불완전한 요새에 불과할 수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시선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이 요구된다. 트위터 해시태그에 맡겨두긴 너무하지 않나 하는 말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enclosed in a gray border.

MEMO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ent.

